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신언근 의원(찬성자 9명)

나. 의안번호 : 제 2173호

다. 발의일자 : 2017. 10. 26

라. 회부일자 : 2017. 10. 30

2. 제안이유

최근 들어 건축공사장 등 각종 건축물에서 용접·용단으로 인한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서장에게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토록 하는 한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그 피해를 줄이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따라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이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 2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원안 참조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공사장 등 각종 건축물 내에서 용접·용단으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어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착공 시 소방서장에게 안전수칙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용접·용단 작업에 따른 화재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려는 것임.

[표 1]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u>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u>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u> ①----- ----- ----- -----.</p> <p>② <u>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제1항 별표에 따른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u></p> <p>③ <u>「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1항 별표의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u></p>

- 최근 5년간 용단·용접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건수를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이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표 2] 최근 5년간 용단·용접으로 인한 화재 발생 및 피해현황(서울시)

연도	발생건수	인명피해	사망	부상	재산피해 (천원)
총합계	453	46	10	36	3,725,719
2013	63	8	3	5	896,851
2014	88	4	2	2	236,275
2015	92	7	1	6	456,788
2016	116	22	2	20	661,487
2017.10	94	5	2	3	1,474,318

- 안 제2조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1)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2)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소방시설공사3)를 하려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교육토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만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등을 말한다.
- 3) 소방시설공사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을 말한다.

- 이는 지난 2월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메타폴리스 주상복합건축물 화재’⁴⁾와 같이 용접·용단으로 인한 화재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작업 전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그 효과가 기대되어 바람직하다 사료됨.
- 안 제3조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건축물⁵⁾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에게도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실제 해당 대상물에 상주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적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여겨짐.

4) 발생일시: 2017.02.04, 인명피해: 사망4명, 부상자47명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제5항 및 제7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⑬ 생략